

## 자치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

미주자치연회는 연회의 경계가 너무 광활하여 한 곳에서 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발전적으로 교회가 우리 연회 경계내의 각처에 개척 설립되어 연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회원들의 증가로 인해 연회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고, 동부나 서부 한 곳에서 모일 경우 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번 2017년 초에 실시했던 정회원, 준회원, 재판위원교육을 동 서부로 나누어 실시해 본 결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 참석자들도 크게 증가하였고, 진행과 운영상의 편리함이 더해져서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연회 본부의 보고입니다.

이에 자치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함께 모인 위원들은, 미주연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동, 서부 교구로 연회를 분산 개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처음 자치법에서 제안되었던 - 2016연회에서 부결 되었지만 - 교구제와는 다른 모델입니다. 교구회나 교구장이 있는 의회의 분산,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연회를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분산 개최하는 모델입니다. 즉, 한 연회, 한 감독 그리고 1인 총무와 지역별 행정을 관리할 2인의 간사로 현재 조직과 같으면서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위원들은 연회 행정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총무와 간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반영했습니다.

연회는 축제여야 한다는 연회원들 모두의 바램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필요한 내용과 미래 발전적으로 필요한 자치법을 개정할 때 매년 연회에서 개정안을 다루지 않고 입법의회를 구성하는데 개정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법을 개정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2020년 총회 감독취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했습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나 갈등이 있기에 구역의 결의로 참석하는 교구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입법의회는 2년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하고 정기적인 연회소집 이전 1월로 모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목회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권이나 학연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연회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연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조직과 질서를 정비하고 건강한 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막힌 담이 없이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치법개정위원회 위원일동

# 2017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b>1 자치법</b>	<p><b>【1】제1조(미주자치연회 자치법)</b>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한다)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되 연회에서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p> <p><b>【2】제2조(감독)</b> 미주자치연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미주자치연회를 대표하는 최고 영적 지도자이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재임할 수 없다.</p> <p><b>【3】제3조(총무 및 간사)</b> 1인의 총무와 2인의 간사를 둔다.                      ① 총무는 감독의 지휘에 따라 본부와 연회의 행정 전반을 관할하며 간사들에게 연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할하게 한다.                      ② 총무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총무와 간사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한다.</p> <p><b>【4】제4조(자치법개정위원회)</b> 감독은 자치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법, 시행세칙, 내규 등을 심의하여 연회에서 개정한다.</p>	<p><b>【1】제1조(명칭)</b> 우리 연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라 한다.</p> <p><b>【2】제1조(미주자치연회 자치법)</b>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한다)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한다.(개정)                      ①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p> <p>현행 2단 삭제</p> <p><b>【3】제2조(자치법의 개정)</b> 자치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법의 개정은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주자치연회입법의회(이하 미주입법의회라 칭한다)에 상정하고 미주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신설)                      ② 감독은 의결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단,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개정위원장이 공포한다. (신설)                      ③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 (현행 1단에서)</p> <p>현행 3단 삭제</p> <p><b>【4】제3조(자치법개정위원회)</b>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자치법개정안, 시행세칙, 내규 등을 심의하여 개정안 및 시행세칙은 미주입법의회에,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발의한다. (개정)</p>

<p><b>2</b> <b>조직과</b> <b>행정법</b></p>	<p><b>【5】제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b>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독의 자격은 정회원 20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p> <p>② 감독은 연회 기간 중에 간선제로 선출한다.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p>	<p><b>【5】제1조(교구)</b> 미주자치연회는 동부교구와 서부교구로 분산 개최한다. (신설)</p> <p><b>【6】제2조(의회조직 및 위원회의 구성)</b> 모든 의회조직 및 위원회의 구성은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 여성 및 연하자 배려의 원칙에 대하여 미주자치연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신설)</p> <p><b>【7】제3조(감독)</b> 미주자치연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을 둔다.</p> <p>① 감독은 미주자치연회를 대표하는 최고 영적 지도자이다.</p> <p>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2단에서 개정)</p> <p><b>【8】제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b> (현행)</p> <p>① 감독의 자격은 정회원 20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하고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p> <p>② 연회의 표준정관(By Law)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신설)</p> <p>③ 감독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한다. 단 자립교회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p> <p>④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한다. (신설)</p> <p>⑤ 감독은 간선제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p> <p>⑥ 감독은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취임</p>	

	<p><b>【6】제2조(감독의 임기)</b> 감독의 임기는 총회에 맞춰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재임할 수 없다. 단, 궐위 및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감독이 궐위 혹은 유고되었을 때는 감리사 중 연급,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권자가 되어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한다. 감독의 보선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b>【7】제3조(감독의 직무)</b> 감독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되 미주자치연회와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서 정한다.</p> <p>① 감독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에서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키는 교역자 및 평신도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직무 또는 직임을 정지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한다.</p> <p>② 감독은 직무 또는 직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p>	<p>후 임기를 시작한다. 감독 당선자는 당연직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신설)</p> <p>⑦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p> <p><b>【9】제5조(감독의 임기)</b> 감독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p> <p>①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재임할 수 없다. 단, 궐위 및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② 감독이 궐위 혹은 유고되었을 때는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권자가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한다. (개정)</p> <p><b>【10】제6조(감독의 직무) 현행</b>  현행 ①②항 삭제</p> <p>① 감독은 연회의 최고 임원으로서 미주자치연회를 대표하며,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교역자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은 감독을 선출하지 않은 교구에서 선출한다. (신설)</p> <p>② 감독은 연회를 양 교구로 분산하여 개최한다. (신설)</p> <p>③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신설)</p> <p>④ 감독은 차기 감독당선자와 협의하여 연회총무 후보를 복수로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추천한다. (신설)</p> <p><b>【11】제7조(연회실행부위원회)</b> 연회는 양 교구 간의 원활한 협력 운영을 위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p> <p>① 연회실행부위원회는 양 교구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p>	
--	---	--	--

	<p><b>【8】제4조(연회본부의 설치)</b> 미주자치연회의 행정을 지원하는 연회본부를 둔다.</p> <p>① 연회본부는 감독이 정한다.</p> <p>② 연회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본부'로 호칭한다.</p> <p><b>【9】제5조(연회본부의 조직)</b> 연회본부는 본부와의 연락과 연회의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p> <p>① 감독 1인 (무급)</p> <p>② 총무 1인 (무급)</p> <p>③ 간사 2인 (무급)</p>	<p>②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외 각 교구에서 동수로 구성하되 감독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신설)</p> <p>③ 연회실행부위원은 교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p> <p>④ 연회총무 및 감사 2인, 연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권위원이 된다. (신설)</p> <p><b>【12】제7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b> (신설)</p> <p>① 교구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논의 및 조율한다. (신설)</p> <p>② 정회원 연수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신설)</p> <p>③ 연회 내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신설)</p> <p>④ 3인 이내의 감독 후보를 천거한다. (신설)</p> <p>⑤ 감독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무를 선출한다. (신설)</p> <p>⑥ 연회 소속기관을 인준한다. (신설)</p> <p>⑦ 교구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 결의한다. (신설)</p> <p><b>【13】제9조(연회본부의 설치)</b> 현행</p> <p>① 현행</p> <p>② 현행</p> <p><b>【14】제10조(연회본부의 조직)</b> 현행</p> <p>① 현행</p> <p>② 현행</p> <p>③ 현행</p> <p><b>【15】제11조(연회총무 및 간사)</b> 1인의 연회총무와 각 교구에 1인의 간사를 둔다. (신설)</p> <p>① 총무는 감독의 지휘를 받아 본부와 연회의 행정 전반을 관할하며 교구 간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p>	
--	---	---	--

	<p>【10】제6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정회원 11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p> <p>【11】제7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2년으로 한다.</p> <p>【12】제8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보선의 경우도 같다. 단,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13】제9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되 미주자치연회의 특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 따른다.</p>	<p>② 총무와 교구 간사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신설)</p> <p>【16】제1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정회원 12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개정)</p> <p>【17】제13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한다. (개정)</p> <p>【18】제14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이 차기 감독 당선자와 협의하여 총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추천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의 경우는 감독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추천하여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한다. 단,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p> <p>【19】제15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고 미주자치연회의 특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 따르되 기타 직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p> <p>【20】제16조(교구 간사의 자격) 교구 간사의 자격은 정회원 11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신설)</p> <p>【21】제17조(교구 간사의 선출) 교구 간사는 각 교구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선의 경우도 같다. 단, 보선된 간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p> <p>【22】제18조(교구 간사의 직무) 교구 간사의 직무는 연회실행</p>	
--	--	---	--

	<p>【14】제10조(교역자의 파송제한) 담임자 외의 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는 개체교회는 일반회계 소계 7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될 경우에는 각 1명당 일반회계 결산 3만불 이상 증액을 기준으로 한다.</p>	<p>부 위원회와 교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회총무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p> <p>【23】제19조(교구 간사의 임기) 교구 간사의 임기는 간사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 겸임으로 한다. (신설)</p> <p>【24】제20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연회의 표준정관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등록한 구역의 회원이어야 한다 (신설)</p> <p>②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최근 4년 간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교역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p> <p>③ 감리사를 역임하지 않은 이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p> <p>【25】제21조(교역자의 파송제한) 현행</p> <p>【26】제22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소속)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6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체교회는 반드시 지방회와 교구에 소속해야 한다. (신설)</p> <p>【27】제23조(교단탈퇴에 대한 처리) (신설)</p> <p>① 교단탈퇴의 결의는 정기당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재적회원이란 함은 전년도 정기당회의 입교인 총수를 말한다. (신설)</p>	
--	--	---	--



		<p>②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그 동산 및 부동산은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된다. (신설)</p> <p>③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구역담임자에 대하여는 목사직을 면직한다. (신설)</p> <p>④ 1항의 합법적인 결의가 없는 교단탈퇴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p> <p>⑤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교인이 있을 때에는 감리사 혹은 감독과 상의하여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p>	
<p><b>3</b> <b>의회법</b></p>	<p><b>【15】제1조(기획위원회의 직무)</b>          ① 기획위원회는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를 구성하며 담임목사는 재단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은 개체교회 Church Board Member를 겸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교역자와 장로로 구성한다. 단, 5인 이하일 경우 5인까지 권사로 충원할 수 있다.</p> <p><b>【16】제2조(지방회의 조직)</b> 신설되는 지방회는 12개 이상의 구역으로 조직하며 그 미만일 때는 선교지방회로 한다. 선교감리사는 실행위에 참석하되 의결권이 없다.</p> <p><b>【17】제3조(지방회사회평신도부총무)</b> 지방회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교역자 혹은 평신도를 지방회의 자율로 결정하여 임명한다.</p>	<p><b>【28】제1조(구역 기획위원회의 직무) 현행</b>          ① 현행          ② 현행          ③ 현행</p> <p><b>【29】제2조(구역의 교구이동)</b> 구역회의 결의가 있을 시에는 감독의 인준을 받아 교구를 이동할 수 있다. (신설)</p> <p><b>【30】제3조(지방회의 조직)</b> 지방회는 반드시 15개 이상의 구역으로 조직하며 선교지방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p> <p><b>【31】제4조(지방회 사회평신도부 총무) 현행</b></p> <p><b>【32】제5조(교구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b> 교구별로 교구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① 교구운영위원회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신설)          ② 교구의 감리사들과 각 지방회에서 안수 받은 장로들 중에</p>	

	<p><b>【18】제4조(연회의 조직)</b></p> <p>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미납된 부담금이 없이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지며 결의권은 없다. 단, 본부부담금에 한하여 최근 4년간 부담금을 완납하면 연회의 회원권을 가진다.</p> <p>② 회원권이 없는 경우나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진급이 정지된다.</p> <p><b>【19】제5조(연회의 소집)</b> 연회의 소집은 감독이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집한다.</p> <p><b>【20】제6조(연회 분과위원회)</b>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p>	<p>서 선출된 평신도 대표로 구성한다.. 단 교구 감사 및 연회총무, 교구간사와 연회서기, 연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소속 교구의 언권위원이 된다. (신설)</p> <p>③ 교구운영위원회의 소집은 감독이 필요하<del>다</del>고 인정될 때, 그리고 교구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p> <p>④ 교구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와 연회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제외한 교구운영의 제반사항으로 한다. (신설)</p> <p><b>【33】제6조(연회의 조직)</b></p> <p>① 연회는 동부교구와 서부교구로 조직하고 분산 개최한다. 단, 두 교구 중 구역회의 의결로 소속할 교구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p> <p>②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각 지방에서 장로 권사 순으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p> <p>③ 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p> <p>④ 준회원, 협동회원 및 타교단과 타교파에 파송된 회원은 발언권만 가지며 결의권은 없다. (개정)</p> <p>⑤ 회원권이 없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진급이 정지된다. (개정)</p> <p><b>【34】제7조(연회의 소집)</b> 연회의 소집은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교구별로 분산 개최한다. 단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p> <p><b>【35】제8조(연회 분과위원회)</b>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개정)</p>	
--	---	---	--

<p>①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건의안심사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추가)를 상임으로 운용한다.</p> <p>②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연회회의록조사위원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투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 운용한다.</p> <p>③ 각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b>【21】제7조(연회파송이사)</b> 미주감리교신학교에 연회파송이사를 12명 이내로 미주감리교신학교의 재단이사로 파송한다. 감독은 미주감리교신학교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p> <p><b>【22】제8조(연회 특별위원회)</b> 미주자치연회 안에 자치법개정위원회, 목사고시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를 둔다.</p> <p>① 자치법개정위원회는 감독이 목회자6명, 평신도2명으로 조직하여 자치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여 차기연회에 상정하고 연회 결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한다. 단,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개정위원장이 공포한다.</p> <p>② 목사고시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세부지침은 과정법에 따른다.</p> <p>③ 유지재단이사회의 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정관에 따른다.</p>	<p>①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건의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행정조정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를 상임으로 운용한다. (개정)</p> <p>② 현행</p> <p>③ 현행</p> <p>④ 각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교구별 동수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운영한다. (신설)</p> <p>⑤ 각 상임분과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2 씩 선출한다. (신설)</p> <p><b>【36】제9조(연회파송이사)</b> 연회는 미주동부감리교신학대학교와 미주서부감리교신학대학교에 각각 12명 이내로 재단이사를 파송한다. 감독은 양 신학대학교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p> <p><b>【37】제10조(연회 특별위원회)</b> 미주자치연회 안에 자치법개정위원회, 목사고시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은급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관목회위원회를 둔다. (개정)</p> <p>① 자치법개정위원회는 8명으로 조직하고 자치법 개정안과 시행세칙은 심의하여 미주입법의회에,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p> <p>② 현행</p> <p>③ 현행</p>	
--	---	--

	<p><b>【23】제9조(회원권, 개회 및 의결 성원)</b></p> <p>① 지방회 및 연회의 개회 성원은 회원권자의 과반 등록으로 한다.</p> <p>② 지방회 및 연회의 의결은 의결 당시 회의장에 출석해 있는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은급대책위원회는 연회의 은급방안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p> <p>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사업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p> <p>⑥ 기관목회위원회는 군목, 원목, 교목 등의 기관파송 목회자에 대한 수급과 훈련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신설)</p> <p>⑦ 특별위원은 양 교구 동수의 인원으로 조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2씩 선출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신설)</p> <p><b>【38】제11조(미주입법의회)</b> 미주입법의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대한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신설)</p> <p>① 미주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의회가 개최되는 해의 1월 중에 감독이 소집하고, 감독은 미주입법의회의 의장이 된다. (신설)</p> <p>② 미주입법의회의 조직은 당연직 대표와 양 교구에 각각 선출된 25명씩의 선출직 대표들로 조직한다. (신설)</p> <p>③ 감독, 연회총무, 연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직권상 대표가 된다. (신설)</p> <p>④ 선출직 대표 중에는 여성 대표 2인 이상, 50대 미만 대표 2인 이상, 평신도 대표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39】제12조(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b> (개정)</p> <p>① 지방회 및 연회, 미주입법의회의 회원권자는 각종 부담금(지방회, 연회, 총회)을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완납한 구역의 회원으로 한다. 완납이라 함은 과거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설)</p> <p>② 지방회, 연회 및 미주입법의회의 개회 성원은 회원권자의 과반 등록으로 한다. (개정)</p> <p>③ 현행 ②항</p> <p>④ 미주입법의회의 의결은 등록자의 과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	---	--	--

<p><b>4</b> <b>교회</b> <b>경제법</b></p>	<p><b>【24】제1조(부담금의 납입)</b> 지방, 연회, 본부 본부부담금을 당해년도 말, 12월 31일까지 완납한 구역의 회원은 지방회, 연회의 회원권을 갖는다. 그 해의 회원권자 수가 그 해 각종 의회의 재적이 된다.</p> <p><b>【25】제2조(부담금의 성실 납부)</b> 연회부담금의 경우 모든 구역의 최소 납부금액은 150달러(US)로 한다. 부담금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감독이 임명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다.</p> <p><b>【26】제3조(유지재단이사회의 조직)</b> 유지재단이사회는 개체 구역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록한 교회의 회원을 이사로 하여 13명 이내로 조직한다. 단, 감독이 이사장이 된다.</p> <p><b>【27】제4조(유지재단이사회의 직무)</b> 유지재단이사회는 연회 및 개체 구역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p>	<p><b>【40】제1조(부담금의 납입)</b> 각종 부담금(지방회, 연회, 총회)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p> <p><b>【41】제2조(연회부담금의 성실 납부)</b> 연회부담금의 최소 납부액은 150달러로 하되, 미국지역 이외의 구역은 현지 화폐 및 환율을 고려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p> <p><b>【42】제3조(유지재단이사회의 조직)</b> 현행</p> <p><b>【43】제4조(유지재단이사회의 직무)</b> 현행</p>	
<p><b>5</b> <b>재판법</b></p>	<p><b>【28】제1조(심사 및 재판)</b></p> <p>① 교인의 심사, 재판은 지방 재판위원회와 연회 재판위원회의 2심제로 한다.</p> <p>② 교역자의 심사, 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와 연회특별재판위원회의 2심제로 한다.</p> <p>③ 행정조정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도 이를 준용한다.</p>	<p><b>【44】제1조(심사 및 재판)</b></p> <p>① 교인의 재판은 지방재판위원회와 연회재판위원회의 2심제로 한다. (개정)</p> <p>② 교역자의 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와 연회특별재판위원회의 2심제로 한다. (개정)</p> <p>③ (현행)</p>	
<p><b>6</b> <b>선거법</b></p>	<p><b>【29】제1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b></p> <p>① 감독의 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p> <p>② 감독 후보 추천 방법 : 연회실행부위원회는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후보를 추천받되 3인 이상이면 토론 없이 즉시 투</p>	<p><b>【45】제1조(감독의 선거)</b> (개정)</p> <p>① (현행)</p> <p>② (현행)</p>	

<p>표하여 다득표자 3인을, 3인 이내이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p> <p>③ 선거인단은 각 지방에서 정회원 11년급을 마친 목회자 1인과 안수 받은 장로 1인으로 구성하며 연회에 참석한 각 지방의 회원권자 중, 지방에서 추천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으로 선거인단선거에 임한다.</p> <p>④ 선거인단의 선거방법 : 선거인단은 각 지방에서 추천으로 선출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이 없다.</p> <p>⑤ 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감독 후보들에 대해서 토론 없이 즉시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p> <p>⑥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토론 없이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 연급, 연장의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는 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한다.</p> <p>⑦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 관리 하에 우편투표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사전 기일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p> <p><b>【30】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b></p> <p>① 선거관리위원은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구성하며 연회에서 선출하고 2년의 임기로 한다.</p>	<p>③ 선거인단은 정회원 11년급을 마친 목회자와 안수 받은 장로로 구성하며 연회에 참석한 자격자 중 추천으로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을 선출하고, 선출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으로 선거인단 선거에 임한다. (개정)</p> <p>④ 선거인단의 선거방법 : 선거인단의 추천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이 없다. 개표는 양 교구가 동시에 한다. (개정)</p> <p>⑤ 현행</p> <p>⑥ 현행</p> <p>⑦ 삭제</p> <p><b>【46】제2조(감독회장의 선거) 감독회장 선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실시한다. (신설)</b></p> <p>①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연회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p> <p>②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우편투표로 실시한다. (신설)</p> <p><b>【47】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b></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별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한다. (개정)</p>	
---	---	--

	<p>②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선출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를 인계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서기 1인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시작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로부터 추천된 감독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들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인단을 소집하여 감독 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에서 감독 당선자를 공포한다.</p>	<p>② 감독이 소집하여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개정)</p> <p>③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된 감독후보들의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통과된 후보에게 출마의지를 확인한다. (개정)</p> <p>④ 교구별로 선거인단이 추첨으로 선출되는 즉시 선거인단을 소집하여 확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p> <p>⑤ 개표는 양 교구가 동시에 하여 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 공포한다. (신설)</p>	
<p><b>7</b> <b>경계법</b></p>	<p><b>【31】제1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b></p> <p>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며 그 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는 감리회의 선교연회, 혹은 타연회의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단,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 당시 캐나다중앙지방에 소속되었던 교회들만은 예외로 한다.</p> <p>② 지방의 경계는 남가주동, 남가주서, 남가주남, 남가주북, 오렌지, 뉴욕동, 뉴욕서, 뉴잉글랜드, 동남부, 미서북부,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중남부, 중부동, 시카고동, 시카고서, 워싱턴, 캐나다동부, 캐나다서, 국외지방으로 한다.</p>	<p><b>【48】제1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 현행</b></p> <p>① 현행</p> <p>② 현행</p>	
<p><b>8</b> <b>과정법</b></p>	<p><b>【32】제1조(한국어 목회자 과정)</b></p> <p>① 개체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전도사는 지방회의 서리 과정을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준회원과 정회원 허입과정은 동일하다.</p> <p>② 개체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전도사로서 진급하거나 안수를 받는 경우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연봉이 미화 일만 이천 달러(U\$)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b>【49】제1조(한국어 목회자 과정) 현행</b></p> <p>① 현행</p> <p>② 개체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전도사로서 진급하거나 안수를 받는 경우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p>	

<p>③ 개체교회 담임자로서 과정을 시작하였더라도 안수 받기 전에 부담임자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목사고시를 합격하여야 한다.</p> <p>④ 서리 및 준회원의 진급은 전임목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 <p><b>【33】제2조(현지어 목회자 과정)</b></p> <p>① 해당 국가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로서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M.div 과정 중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학위 취득 후 첫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학위취득 후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p> <p>② 해당국가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로서 이미 M.div 과정을 마친 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연회에서 과정과 자격을 필한 후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p> <p>③ 준회원으로 안수를 받은 후에도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진급을 계속하여야 한다.</p> <p>④ 위에 해당되는 이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자의 연봉이 미화 일만 이천 달러(US\$)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⑤ 개체교회 담임자로서 과정을 시작하였더라도 안수 받기 전에 부담임자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목사고시를 합격하여야 한다.</p> <p><b>【34】제3조(목사고시위원회 조직)</b></p> <p>① 목사고시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목사고시위원회는 연회 과정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정한다 (개정)</p> <p>③ 현행</p> <p>④ 현행</p> <p>⑤ 서리 및 준회원은 진급을 시작한 교구에서 준회원 과정을 마쳐야 한다.(신설)</p> <p><b>【50】제2조(현지어 목회자 과정) 현행</b></p> <p>① 현행</p> <p>② 현행</p> <p>③ 현행</p> <p>④ 위에 해당되는 이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캐나다 멕시코 지역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⑤ 현행</p> <p><b>【51】제3조(목사고시위원회 조직) 현행</b></p> <p>① 현행</p> <p>② 현행</p>	
--	---	--



<p><b>【35】제4조(목사고시위원회 직무)</b>  ① 해당자의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관장한다.  ② 3년간 담임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목사고시 응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p> <p><b>【36】제5조(타교단으로부터 이명) 타 교단으로부터 이명해 오는 목회자의 연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b>  ① UMC 정회원으로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오는 경우에는 목회연한의 100%를 산정한다.  ② 연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타 교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오는 경우는 목회연한의 70%를 산정한다.  ③ 이명증서가 없거나 기타 연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p> <p><b>【37】제6조(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b>  ① 타교파 혹은 타 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위와 같은 경우 최대 목회연한의 50%에 해당되는 연수로 진급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p> <p><b>【38】제7조(기관 파송)</b>  ①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파송 기관을 인준한다.  ② 기관 파송을 받는 이에 대한 자격, 과정 및 진급은 과정 자격위원회에서 다룬다.  ③ 기관 파송을 받는 이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고 연회에 사역을 보고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p>	<p><b>【52】제4조(목사고시위원회 직무) 현행</b>  ① 현행  ② 현행</p> <p><b>【53】제5조(타교단으로부터 이명) 현행</b>  ① UMC 정회원으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목회연한의 100% 까지 산정한다. (개정)  ② 연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타 교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목회연한의 70% 까지 산정한다. (개정)  ③ 현행</p> <p><b>【54】제6조(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 현행</b>  ① 타교파 혹은 타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반드시 등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② 위와 같은 경우 최대 목회연한의 50%에 해당되는 연수로 진급할 수 있으며 지방회 및 연회에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개정)</p> <p><b>【55】제7조(기관 파송) 현행</b>  ①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 기관을 심의, 인준한다. (개정)  ② 현행  ③ 현행  ④ 연회에서 은퇴한 교역자는 연회의 모든 인준기관에서도 은퇴하여야 한다. (신설)</p>	
--	---	--

	<p><b>【39】제8조(선교사의 파송)</b>          ①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② 선교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 과정 및 진급은 과정 자격위원회에서 다룬다.          ③ 선교사는 소속교회와 연 일만 이천 달러(U\$) 이상의 후원 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연회에 의무적으로 선교보고를 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p>	<p><b>【56】제8조(선교사의 파송)</b>          ① 현행          ② 선교사 후보자는 연회가 인준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이들의 과정, 자격 및 진급은 과정 자격위원회에서 다룬다. 단, 미주감신에서 소정의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현행          ④ 평신도 선교사(전문직 선교사)는 미주감신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연회 인준 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신설)</p> <p><b>【57】제9조(장로 안수 과정) (신설)</b>          ① 개체교회 장로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미주감신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p>	
<p><b>9 정관 규정 규칙</b></p>	<p><b>【40】제1조(구역 재단이사회의 정관) 개체 구역 재단이사회 (Board of Trustee)의 정관은 유지재단이사회에서 별도의 공통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하며 교육과 대체작업을 안내한다.</b></p> <p><b>【41】제2조(연회 내규) 연회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b></p>	<p><b>【58】제1조(구역 재단이사회의 정관) 개체 구역 재단이사회 (Board of Trustee)의 정관은 유지재단이사회에서 별도의 표준정관(By Law)을 제정하여 보급하며 교육과 대체작업을 안내한다.(개정)</b></p> <p><b>【59】제2조(연회 내규) 연회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 (개정)</b></p>	
<p><b>10 경과 조치법 (삭제)</b></p>	<p><b>【42】제1조(감독의 임기) 32회 총회에 해당하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임기는 제24회 연회부터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b></p> <p><b>【43】제2조(유지재단이사회 정관 제정) 유지재단이사회는 제24회 미주자치연회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제정하여 관계기관에 등록을 마친다.</b></p>	<p><b>【60】제1조(감독의 임기) (삭제)</b></p> <p><b>【61】제2조(유지재단이사회 정관 제정) (삭제)</b></p>	

	<p>【44】제3조(자치법 시행세칙)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제24회 미주자치연회를 마친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 결의 후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자치법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하고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관계기관에 등록을 마친다.</p>	<p>【62】제3조(자치법 시행세칙) (삭제)</p>	
<p>10 부 칙</p>		<p>부칙(2016. 4. 28.) 【63】제1조(시행일) 이 법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최종 결의를 거쳐 감독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17. 5. 4.) 【6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65】제2조(경과조치) 동부교구와 서부교구로 분리행정, 분산 개최에 관련된 모든 법의 시행은 2020년 감독취임 직후부터 시행한다. 그 때까지는 현행대로 준용한다.</p> <p>【66】제3조(경과조치) 33회 총회에 해당하는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의 선출은 2018년 제26회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선출하고, 34회 총회에 해당하는 감독은 본 개정안에 의하여 2020년도에 개최된 연회에서 선출한다.</p> <p>【67】제4조(경과조치) 2018년 제26회 연회 후 선출된 연회 총무와 간사의 임기는 2020년 제28회 연회까지이고, 제28회 연회 후 선출된 총무와 간사로부터 임기는 4년이 된다.</p> <p>【68】제5조(경과조치) 지방경계는 2020년 제28회 연회에서 지방경계조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제 29회 연회에서 조직 시행한다.</p>	